

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(디딤돌·전략형)

『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』 디딤돌·전략형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4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안내 사항 -

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제도 완화)

1.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(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·하반기 1회 신청)
→ 내역사업별(디딤돌·전략형)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
2. 디딤돌·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(부채비율 1,000% 이상, 완전자본잠식) 적용 예외
→ 디딤돌·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,000% 이상,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
3. 동시수행 과제 수(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) 폐지
→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(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)

(현행 유지)

4. '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

< 졸업제 사업 >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창업성장기술개발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|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|
| 총 4회 | | |

5.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.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

<내역사업 기준표>

| 세부사업명 | 창업성장기술개발 | |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| | |
|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-|
| | 초기 | 도약 | 성숙 | 초기 | 도약 | 성숙 |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내역사업명 | 디딤돌 | ↔ x | 전략형 | ↔ x | TIPS | ↔ x | 시장 대응형 소부장 일반 | ↔ x | 시장 확대형 소부장 전략 | ↔ x | 수출 지향형 |
|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
단, '22년 창업성장 소재·부품·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,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,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

6.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)에 별도 안내
7.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

1. 사업 소개

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, 창업 7년 이하이면서,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세부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&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“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”으로,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*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[붙임2]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

< 지원대상 >

| 구분 | 창업 7년 이내,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|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세부사업 | 창업성장기술개발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|
| 내역사업 | TIPS | 수출지향형, 강소기업100 |
| | 전략형 | 시장확대형, 소부장전략 |
| | 디딤돌 | 시장대응형, 소부장일반 |

3. `23년 지원내용

- (사업목적)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, 미래 신산업 기술(딥테크)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
- (하반기 지원규모) 총 302억원 내외(하반기 470개 내외)
- (지원조건) 총 연구개발비의 80%이내

| 내역 사업 |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* | 지원방식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디딤돌 | 최대 1년, 1.2억원 | 80% 이내 | 자유공고 또는 품목지정 (세부과제별 상이 붙임2 확인) |
| 전략형 | 최대 2년, 3억원 | | |

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20%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4.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(단위 : 억원, 개)

| 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지원대상 | | 지원과제 (지원예산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|
| 디딤돌 | 지역 창업 허브 연계 | 중소벤처기업부 R&D 수행이력이 없는 |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가를 통해 추천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*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지원대상을 정하여 개별공고 및 접수 | 250개 (150억원) |
| |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| |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선정되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* 운영기관(서울창경센터) 추천받은 창업기업 | 10개 (6억원) |
| | 여성참여활성화 (W Start-up) | | 여성기업 또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** 또는 여성 종사자 중심***의 창업기업 *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 **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20% 이상인 과제 | 50개 (30억원) |
| | R&D 기획지원 연계 | | 중소기업R&D기획지원 완료 후 2023년 디딤돌 R&D기획지원 연계 대상으로 통보 받은 기업 | 30개 (18억원) |
| 전략형 | 실험실 창업기업 | 딥테크 기술 분야의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기업 | | 50개 (38억원) |
| | 글로벌 창업기업 | 창업초기부터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운영기관(경기·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)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| | 40개 (30억원) |
| | 초격차 스타트업 | 독보적인 기술 『10대 초격차 분야』를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+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운영기관 (창업진흥원)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| | 30개 (23억원) |
| | 원전분야 스타트업 | 원자력 중점분야의 R&D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* 별도 원전분야 통합공고 진행 | | 10개 (7.5억원) |

* 디딤돌(지역 창업 허브 연계)는 지역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 예정

**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

*** 디딤돌 내역사업 중 서비스R&D, 바이오R&D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

5. 신청자격 등

- (공통 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,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
 - *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
- (세부과제별 자격)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
 - * [붙임2]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후 신청 필요
- 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미만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결격 예외적용
 - **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- 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)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1] 참고

6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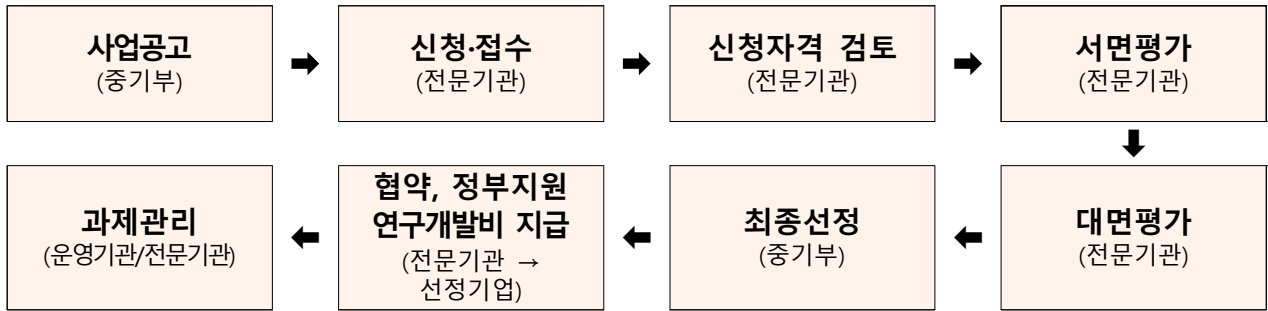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| 일정 및 지원규모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2차(하반기) | | |
| 내역사업 | 세부과제 | 신청·접수 | 접수방식 | |
| 디딤돌 | 지역 창업 허브 연계 |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| [붙임2]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| |
| | 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|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| | |
| | 여성참여활성화 (W Start-up) | '23년 4월 17일 ~ 5월 2일, 18시 정각 접수마감 |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(iris.go.kr) | |
| | R&D 기획지원 연계 | | | |
| 전략형 | 실험실 창업기업 | '23년 4월 17일 ~ 5월 2일, 18시 정각 접수마감 | | [붙임2]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확인 |
| | 글로벌 창업기업 | | | |
| | 초격차 스타트업 | 별도 공고('23년 5월 예정) | - | |
| | 원전분야 스타트업 | 별도 공고('23년 4월 예정) | - | |

-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: 세부과제별 [붙임1, 2] 참조

7.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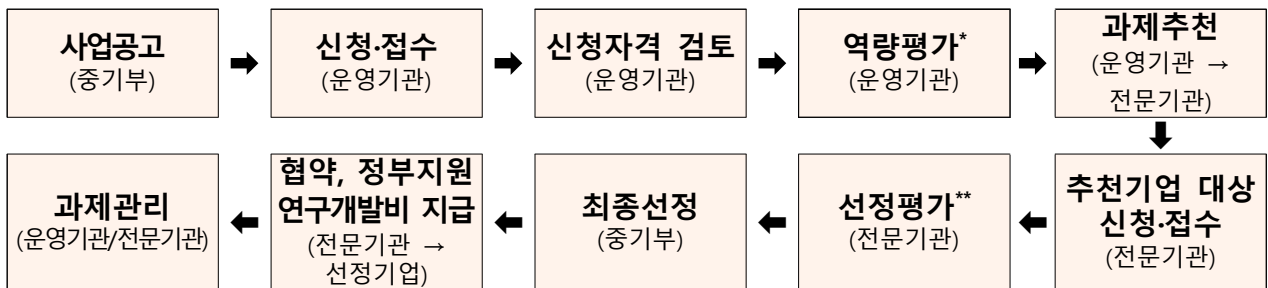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

□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, 전략형 실험실 창업기업, 원전분야 스타트업

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**전문기관**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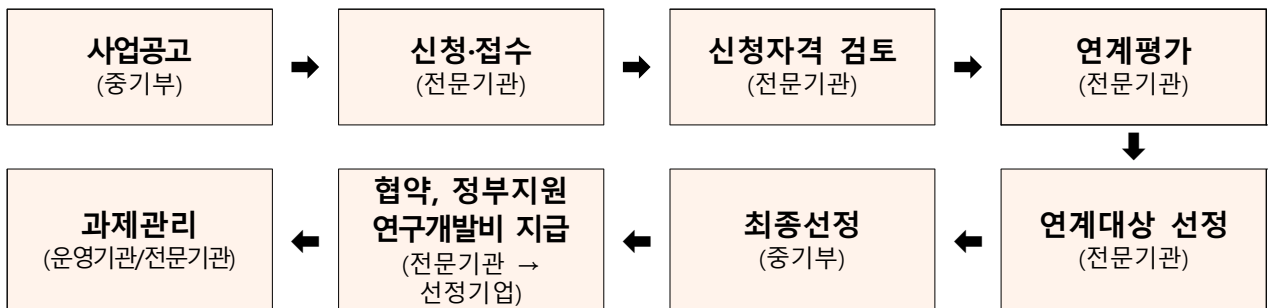
□ 디딤돌 지역창업허브연계, 전략형 글로벌 창업기업, 초격차 스타트업



*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**운영기관**으로 신청

*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**전문기관**으로 신청

□ 디딤돌 R&D 기획지원 연계,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, 전략형 초격차 스타트업



* 연계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**전문기관**으로 신청

**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및 초격차 스타트업은 과제 적정성 여부 검토

8. 기술료 징수기준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(납부방식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
9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

*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

**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
10.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타트업사업실) | 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 | |
| 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·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
- ☞ 관련 웹사이트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 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smtech.go.kr>
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: <http://www.iris.go.kr>
 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1fqd

[붙임1]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

[붙임2]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